[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호 서식] (2016.08.01. 개정)

	서화·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	년

1. 평가의뢰 목적

☐ 상속·증여세 과세업무 ☐ 기타 과세업무

2. 서화·골동품 작자 기본사항

성 명	한 글: (호 :) 한 자: (호 :) 영 문:	국 적	
출생년도		사망년도	

3. 감정평가의뢰 대상작품

작품명(명제)		제작년도	
종별(부문)		수 량	
크기(규격)		재료기법(재질)	
보존상태	양호 ( ) 보통 ( ) 훼손 ( )		
	[내용]		
소장경위			
소장기간		취득가액(장부가액)	원

4.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감정가액

감정가액	전문가 현황		
	전문가 여부 검토	전문분야	경력
원	여( ) 부( )		
원	여( ) 부( )		
원	여( ) 부( )		

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심의회 평가·심의를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자 ○○지방국세청장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세 무 서 장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 서화·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 귀하